

# 제 1 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장 운영 및 구성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 1. 설치·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 21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2008년 1월 18일까지 150일간 운영했다. 이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2000년 2월 제16대 총선 선심위 이래, 2002년 제3회 지선 및 제16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6년 제4회 지선을 거쳐 6번째로 운영된 것이다.



▲ 제17대 대선 선심위 현판식 모습



▲ 선심위 회의 모습

## 2. 구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등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한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됐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7년 8월 21일, 발족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갖고 심의위원장에 유효봉 위원을, 부위원장에 박영상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기관	비 고
위원장	유효봉	변 호 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 원	이수언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정동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대통합민주신당	
	남찬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언론인단체)	
	장현규	전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한나라당	2007. 9. 12. 사퇴
	김성근	변 호 사	한나라당	2007. 10. 1. 위촉
	채근직	변 호 사	대한변호사협회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계)	
	김경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단체)	

### 3. 주요 기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명정대한 선거보도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또한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반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 1. 심의 유형별 절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등에 대해 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 · 의결을 진행한다. 각 유형별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가. 자체심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전문 모니터요원 및 실무팀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가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한다. 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 나. 시정요구심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하며, 요구사항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시정요구 역시 자체심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재심청구도 자체심의 절차와 같다.

###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

선거일전 90일(단,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 혹은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재심청구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의 절차와 동일하다.

## 2. 처벌조항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심의·의결 절차표]



